

『2021년도 본투글로벌센터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1년도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9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 혜 숙
 <전문기관> 본투글로벌센터장 김 종 갑

□ 모집대상

-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있고
-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사업 확장이 필요한 기업으로
- 이미 시장에서 해외진출 성장성 및 진출 계획이 검증*된 기업

* ①~③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① **해외 투자자**(해외 소재 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기관 등 외부 기관 투자자) 또는 **역외 펀드**를 통해 투자를 받은 기업
- ② 해외 진출 파트너가 확정되어 해외 진출 계획이 명확한 기업(**합작법인** 설립(Joint Venture), **자산투자를 동반하는 전략적 협력**(Equity-based Strategic Alliance)에 한함)
- ③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업의 우수 성과를 인정한 **과기부 장관상 표창 기업**

□ 신청자격 : 상기 '모집대상' 중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제외 대상' 해당되지 않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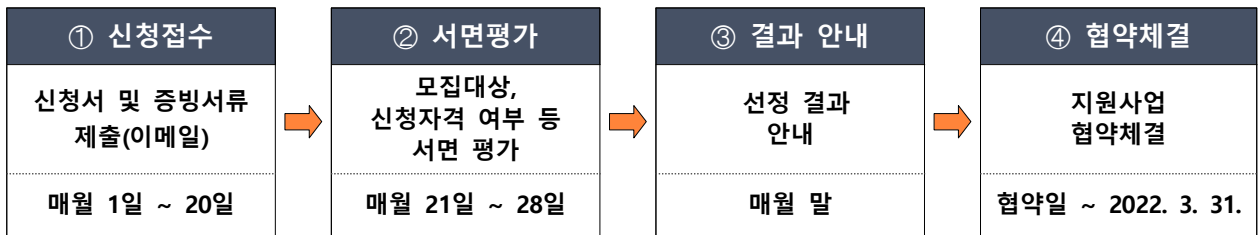
신청자격	①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사업 확장을 필요로 하는 기업 ② ICT 융합 기술 (Data, Network, AI, 5G 등) 보유 기업 ③ 해외 진출이 준비된 기업 ¹⁾ 으로 ④ 제3자 기관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기관)로부터 공고게시일 이전 1억원 이상 투자를 유차 ²⁾ 하고 ⑤ 기업공개(IPO) 전 단계의 비상장 ³⁾ 및 국내 또는 국외 법인사업자 ⁴⁾
제외대상	① 사업 공고일 기준 주권상장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③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④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⑤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본 사업과 동일한 지원 내용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타 사업과 중복 수혜여부가 확인되면, 센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시장조사, 경영(전문)컨설팅, 네트워킹 등 제공

- | |
|---|
| ① PMF (Product Market Fit, 고객 검증) 컨설팅 |
| ② 법률·특허·회계·크리에이티브마케팅 분야 컨설팅(내부/외부) |
| ③ 해외진출 프로그램 |
| - 해외 IR(Investor Relations)·Tech-matching·세미나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 |
| - 글로벌 PR(Public Relations) 지원 |
| ④ 보육공간(판교 스타트업캠퍼스 內 단독형 사무실) 지원 |

□ 신청절차 및 방법



- 모집규모 : 예산소진 시까지
- 모집기간 : 2021. 6. 9. ~ / 모집규모 선발완료 시 마감
* 추가모집 마감 시 본투글로벌센터 홈페이지(www.born2global.com)를 통해 공지
- 선발기준 : 지원자격 적격성, 해외진출 준비도 등
- 접수방법 : 본투글로벌센터 홈페이지(www.born2global.com)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증빙서류(PDF)와 함께 이메일 제출(기업명.zip 파일 제출)
- 접수처 : info@born2global.com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별첨2]
* 본투글로벌센터 홈페이지(www.born2global.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 의 처

- (글로벌사업개발팀) 031-5171-5613 • 선발절차/PMF컨설팅/해외사업 관련
(글로벌경영컨설팅팀) 031-5171-5638 • 법률/회계/특허/마케팅 컨설팅 관련

- 1) 해외 특허, 해외 마케팅 및 세일즈 인력 보유, 현지 법인 및 파트너사 보유 등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 2)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국내외 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사,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기관투자자로부터 1억원 이상 투자확약서(Letter of Commitment)를 받은 기업
- 3) IPO(Initial Public Offering)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그 주식을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
- 4) 사업 공고일 이전 국내 또는 국외 법인사업자로
 -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대한민국 상법상 설립된 법인이 최대주주이거나,
 - 대한민국 국적자 및 대한민국 상법상 설립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이 40%를 초과해야함 (단, 해외 법인전환(주식교환, Flip 등)으로 본사를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이전 당시 지분율을 기준으로 함)

□ 지원 프로그램 ※상세 프로그램은 [별첨1] 참조

지원내용			비고
① 경영 컨설팅	내부	해외 진출 경영 컨설팅 지원 (법률, 특허, 회계,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예산소진 상황 및 사전 진단 내용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외부		
② PMF 컨설팅		제품에 맞는 시장 또는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찾기 위한 PMF(Product Market Fit : 제품 시장 적합성) 컨설팅 지원	
③ 해외사업	해외 IR	해외 주요국 투자유치를 위한 IR 기회 제공 (유관기관 연계)	
	테크매칭	글로벌 대기업과의 PoC위한 피칭행사 및 1:1 맞춤형 비즈니스 미팅 진행	
	교육 세미나	글로벌 파트너와의 Meet-up, 전문가 초청 강의 등 교육 목적 세미나	
④ 보육공간		ICT 분야 혁신기술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사무공간, 회의실 등 편의시설 제공	공실 발생 시 별도안내

□ 의무 이행사항

- K-Global 시스템 내 성과자료 제출(www.k-global.kr)
 - 지원기업은 지원기간 종료 후 2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
정보관리 시스템 가입 후 성과 기초자료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지원이력 등록(www.sims.go.kr)
 - 지원기업은 중소기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지원이력(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정보가 등록

[별첨1] 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① 경영(전문)컨설팅

[내부]

내부 컨설팅	(지원내용) 해외 법률·특허·회계·크리에이티브마케팅 분야 내부 컨설턴트 경영컨설팅 상시 지원
-----------	---

[외부]

외부 컨설팅	(지원내용) 내부 컨설팅 후, 담당 내부 컨설턴트가 추가적 전문 컨설팅의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글로벌 역량을 갖춘 채널파트너(Channel Partner, CP社)를 통해 2차 외부 컨설팅 지원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항목별 최대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원, 기업별 지원 금액 초과 시 기업 부담 후 지원 가능 · 서비스 항목은 중복 신청 가능하며 지원 기간 내 기업별 지원금은 최대 1억 원 을 초과할 수 없음 · 컨설팅 수요발생시, 서비스 항목별 개별 계약을 하며 서비스 비용 총액의 20%는 기업이 선납(파트너사에 직접 지급) 해야 하며 80%는 검수 완료 후 센터가 지급 · 복수 항목의 컨설팅 신청 가능하며, 비용 초과시 기업이 자부담 후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6.6%;">컨설팅 신청</td> <td style="width: 16.6%;">내부 컨설팅</td> <td style="width: 16.6%;">외부 컨설팅* 의뢰</td> <td style="width: 16.6%;">서비스견적/ 선금 지급</td> <td style="width: 16.6%;">결과관리</td> <td style="width: 16.6%;">내용검수/ 지급</td> </tr> <tr> <td>멤버사 서비스 신청</td> <td>내부전문가 상담/ 필요시 CP社 선정 협의</td> <td>서비스 분야 확정/ 컨설팅 의뢰</td> <td>견적제출/ 기업분담금 선납 (총 비용 20%)</td> <td>서비스수행 결과물제출 청구(서)</td> <td>결과검수 지출증빙 대금지급</td> </tr> </table> <p>* 외부컨설팅은 매년 말 기준 사업 지원 금액 소진 시 조기 중단 될 수 있음</p>		컨설팅 신청	내부 컨설팅	외부 컨설팅* 의뢰	서비스견적/ 선금 지급	결과관리	내용검수/ 지급	멤버사 서비스 신청	내부전문가 상담/ 필요시 CP社 선정 협의	서비스 분야 확정/ 컨설팅 의뢰	견적제출/ 기업분담금 선납 (총 비용 20%)	서비스수행 결과물제출 청구(서)	결과검수 지출증빙 대금지급
컨설팅 신청	내부 컨설팅	외부 컨설팅* 의뢰	서비스견적/ 선금 지급	결과관리	내용검수/ 지급								
멤버사 서비스 신청	내부전문가 상담/ 필요시 CP社 선정 협의	서비스 분야 확정/ 컨설팅 의뢰	견적제출/ 기업분담금 선납 (총 비용 20%)	서비스수행 결과물제출 청구(서)	결과검수 지출증빙 대금지급								

[경영 컨설팅 세부내용]

분야	서비스항목	세부내용
법률	해외현지 법인설립 및 법인 운영 법률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현지 (미국, 중국, 일본 등) 법인 설립 - “플립” 관련 법률 검토(국내 및 해외 법률) 및 자문 · 해외현지 법인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Corporate Governance)
	해외사업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영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
	법적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영업활동에 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자문 - 개인 정보보호 방침 및 이용약관 작성(국·영문) 및 법률 검토 - 사업모델에 대한 적법성 검토 및 법적 위험 관리 (필요시 국내 법률 검토 포함)
	투자자문 및 기타 기업구조조정 법률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조달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계약서 및 법률 검토·자문 - 투자 단계별(Seed, Pre-Series A, Series A, Series B)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 - 기업구조조정(역플립 및 청산은 제외) 관련 절차 및 법률적 위험 검토
	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 계약서 및 법률 검토/자문
특허	해외특허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예정) 대상 해외국가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특허출원 (PCT 국제단계포함) - 출원 이후 거절이유통지 대응 및 등록 비용 지원 제외
	IP 위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침해 검토, 경고장 대응, 해외 지식재산 보호 등
	IP R&D 전략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기술 조사, 권리분석, 신규 IP 발굴, IP 전략 수립, IP 가치평가 등 · 표준특허 창출, 특허 조사·분석 등
	해외상표/디자인/저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상표 출원(마드리드 출원 포함), 해외 디자인 출원(헤이그 출원 포함) 및 저작권 등록 등 - 출원 이후 거절이유통지 대응 및 등록 비용 지원 제외
회계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실사·감사, 내부회계제도 설계, 기업진단 및 기타 회계 자문 ·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재무제표 결산 및 기타 회계자문
	세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관련 조세법 검토 및 기타 세무 자문 ·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세무보고 및 관계 당국의 등록 절차 지원 · 해외현지 조세법 관련 문제해결 및 기타 세무 자문
	기업가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투자유치 등을 위한 기업가치평가와 이에 따른 자문 등
	M&A(인수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 관련 조세법 검토 · M&A 관련 기업가치평가와 이에 따른 자문
	IPO(기업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제도 구축 · 국제회계기준(IFRS) 전환 · 기업가치평가 및 각종 권리(전환권, 상환권, 선택권 등) 평가

분야	서비스항목	세부내용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P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 전략 및 관리 방안, 언론 홍보 아이템 발굴 및 기사 개발 자문 • 1:1 글로벌 미디어 피칭 • 인터뷰 연계를 통한 기사노출 • 미디어 킷(Media Kit) 제작 • 와이어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자료 소재 개발, 전략적 메시지 도출 - 보도자료 작성, 보도자료 최종화 - 미디어 리스트 개발, 국내외 와이어링 서비스 어레인지, 보도자료 배포 - 기사화 모니터링, 최종 보고서 작성
	디지털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엔진최적화(SEO), 마켓 플랫폼 마케팅 • 디지털 PR(전략 수립, 콘텐츠 개발 및 제작, 브랜드 커뮤니티 관리, 이슈 대응, 애널리틱스 분석) • 인플루언서 마케팅 • 온라인광고 마케팅(전략 수립, 타겟팅, 카피라이팅, 운영관리, 애널리틱스 분석)
	소셜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 • 구글/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지원 • 광고 크레딧 생성, 노출 추적 및 관리

※ 유의사항

① 공통 분야

- 멤버사의 해외 자회사 또는 해외 모회사에 대한 경영컨설팅은 지원 가능하나 멤버사의 기업분담금은 해외 자회사 또는 해외 모회사가 해외 채널파트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때 멤버사의 회사 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필수적으로 요청할 것임)

② 특허 분야

- 국내 멤버사가 국내 멤버사에 귀속될 지식재산권을 해외 출원 하는 경우, 반드시 국내 채널파트너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함
-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은 반드시 멤버사 단독 명의로 진행하여야 함
- 등록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출원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출원이 완료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출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IP) 소송은 경영컨설팅 지원대상이 아님

③ 크리에이티브마케팅 분야

- PR의 경우 국내외 수상, 투자유치, 계약체결, 업무협약, 서비스 론칭 등의 주제에 한하여 지원가능함
- PR의 경우 유사기관 지원 사업 선정,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내 인사 및 채용, 기업 내 행사, 단순 홍보, 이미 기사화 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함
- PR의 경우 신청일 기준 한 달이 지난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함
- PR의 경우 동일국가 기준, 월 배포 회수 2회 이내, 배포 간격 2주 이상으로 제한
- PR의 경우 최근 3개년도(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멤버사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디지털마케팅의 경우 프로젝트 건당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로 한정됨
- 디지털 마케팅의 경우 단순 홍보물 번역 건, 단순 광고비 집행 건, 크라우드펀딩 캠페인 운영 건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능함
- 소셜마케팅의 경우 기업 내 소셜 마케팅 인력을 보유하고 소셜 마케팅 신청 직전 6개월 이상 광고 운영을 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소셜마케팅의 경우 멤버사 당 최대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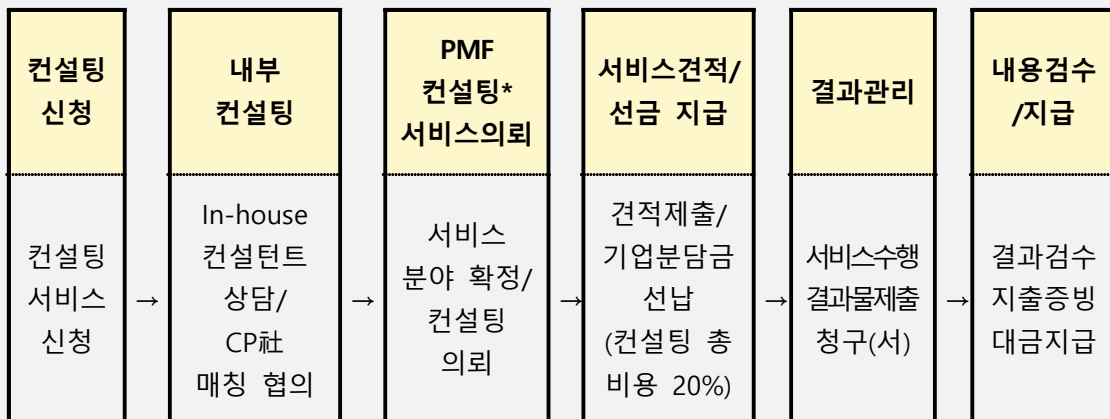
② PMF 컨설팅

(지원목적) 초기 고객 및 제품에 적합한 시장을 찾기 위한 현지 시장 검증 프로그램

(지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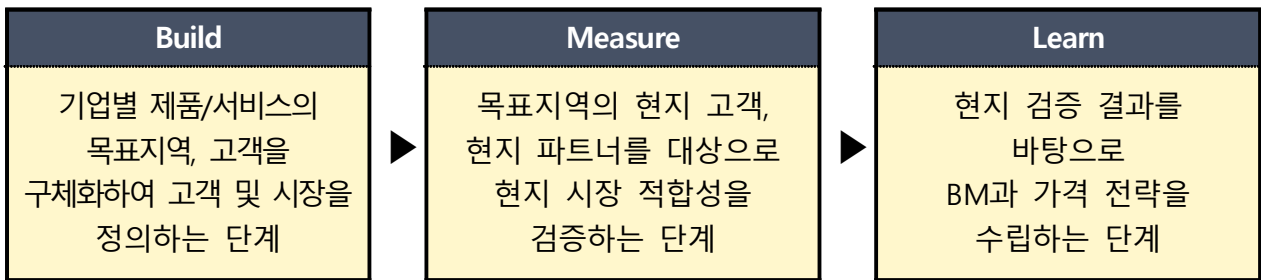
- 서비스 항목별 최대 \$1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초과 시 기업 부담 후 지원 가능
- 서비스 항목은 중복 신청 가능하며 지원 기간 내 기업별 지원금은 최대 \$30,000 을 초과할 수 없음
- 컨설팅 수요발생시 서비스 항목별 개별 계약을 하며 서비스 비용 총액의 20%는 기업이 선납(파트너사에 직접 지급) 해야 하고 80%는 검수 완료 후 센터가 지급
- 서비스 항목 중 잠재 고객 인터뷰 및 잠재 파트너 미팅은 화상회의로 진행됨

(지원단계) 센터와의 내부컨설팅결과에 따라 수혜 단계설정 및 CP사를 매칭함



* PMF 컨설팅은 **매년 말 기준 사업 지원금액 소진 시 조기 중단** 될 수 있음

[PMF 컨설팅 세부내용]



단계	서비스 항목	서비스 내용
Build	고객 및 시장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맞는 고객과 시장 정의 • 이상적 고객 리스트 (ICP : Ideal Customer Profile) • 기업의 제품/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 (VP : Value Proposition)
Measure	사용자 경험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2C 기반의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의 타깃 시장 기반 사용자 경험 조사(UX Research) • 앱/웹 테스트, 신제품(소형 IoT기기, 헬스케어 등 현지 테스트 가능한 제품 보유 기업)사용조사 등
	잠재 고객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2C 기반의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으로 타깃 시장의 잠재 고객과 인터뷰를 통한 시장 검증 • 실제 잠재 고객을 만나 MVP를 보여주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고객들의 피드백 확인
	잠재 파트너 미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2B, B2G 기반의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으로 타깃 시장의 잠재 파트너와 미팅을 통한 시장 검증 • VC, Vendor, Reseller, Distributor, Wholesaler 등과 미팅을 진행하고, 기업의 수요 파악 및 PoC(Prove of Concept) 가능성 검토
Learn	비즈니스 모델 피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MF의 Measure 단계의 고객 리뷰(Review)를 통해 피봇(Pivot)을 필요로 하는 기업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 컨설팅
	Sales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MF의 Measure 단계 또는 직접 시장 진출을 통해 타깃 시장과 타깃 고객이 명확하게 정의된 기업에게 세일즈팅 전략 컨설팅 • 세일즈타깃 리스트 판매가(Pricing), 할인(Discount), 수수료(Commission fee), RMA(Return Material Authorization) 등을 고려한 제품/서비스 가격 결정 전략

③ 해외 IR / 테크매칭 / 교육세미나

(지원목적) 해외 투자유치 및 해외 타깃 시장의 사업개발을 위한 기업 지원	
해외 IR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현지 투자자와 파트너 대상으로 IR행사 진행 -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의 주요국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 - 지역 및 일정 확정 후 멤버사 대상 공고를 통해 선발 - 선발 기업 1인에 한하여 센터내규에 의한 출장비* (항공료, 숙박비) 지원 *출장성격에 따라 출장비 지원이 적용
테크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혁신기술 수요처(글로벌 대기업, 국제기구 등) PoC를 위한 수요 연계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피칭행사 및 1:1 맞춤형 비즈니스 미팅 진행
교육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파트너와의 Meet-up, 전문가 초청 강의 등 교육 목적 세미나 제공 - 프로그램 확정 시, 홈페이지 또는 멤버사 안내를 통해 공지 예정

※ 참여기업으로 선발 확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멤버사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④ 보육공간

(지원목적) ICT분야 혁신기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공간 지원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내)
(지원내용) 독립형 사무실(사무가구 포함), 회의실 등
(지원기간) 최초 12개월 이내(매년 멤버사 선정 시, 12개월 단위 계속 연장 가능)

※ 멤버사만 입주 가능하며, 공실 상황에 따라 모집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별첨2] 제출서류

○ 공통제출 서류

	제출서류	내용	비고
1	영문 신청서	○ 센터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작성 제출	필수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신청접수 후 별도 메일발송 예정	필수
3	국문·영문 기업소개자료	○ 국문 및 영문 기업 소개자료 2개 파일 제출 ※ 기업의 <u>기밀정보</u> 및 <u>민감한 정보</u> 는 반드시 <u>제외 후</u> 제출 요망 ※ 영어권 이외 국가(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는 현지 언어 기업소개자료 추가제출(<u>선택사항</u>)	필수
4	사업자등록증	○ 국내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사가 해외법인인 경우 국내지사 등록증	필수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완납증명서(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 ○ 지방세완납증명서(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	필수
6	투자계약서	○ 제3자(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기관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공고게시일 이전 1억원 이상 투자계약서 사본 ※ 기업의 <u>기밀정보</u> 및 <u>민감한 정보</u> 는 반드시 <u>제외 후</u> <u>발췌하여</u> 제출 ※ 투자자명(주주명부 등재), 투자대상(기업명), 투자금액, 서명 등 계약대상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필수
7	주주명부 (자사양식)	○ 필수(본사), 해당 시(자회사) - <u>최대주주 및 창업자 국적 표기</u> - 해외 법인전환(주식교환 Flip 등)기업은 이전 당시 주주명부 추가 제출 - 본사가 지분율 50%를 초과보유한 자회사를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 <u>자회사 주주명부</u> 추가 제출	필수

○ 선택 제출서류 : ①~③ 조건 중 1개 이상 필수제출

- 하기 제출서류 또는 센터에서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증빙가능한 공식서류
- 필수식별 사항 외 기업의 민감한 내용 및 자료는 반드시 삭제 후 제출

① **해외 투자자(해외 소재 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기관 등 외부 기관 투자자) 또는 역외펀드를 통해 투자를 받은 기업**

제출서류	내용	비고
1 투자계약서 등	<p>1) 투자계약서 : 제3자(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기관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신청일 이전 1억원 이상 투자계약서 사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명(주주명부 등재), 투자대상(기업명), 투자금액, 서명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p>2) 주주명부(자사양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본사), 해당 시(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 및 창업자 국적 표기 - 해외 법인전환(주식교환 Flip 등)기업은 이전 당시 주주명부 추가 제출 - 본사가 지분을 50%를 초과보유한 자회사를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 자회사 주주명부 추가 제출 	공통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 제출 필요 없음

② **자산투자를 동반하는 전략적 협력(Equity-based Strategic Alliance) 또는 합자법인 설립(Joint Venture)에 한함**

제출서류	내용	비고
1 합자법인 증빙서류 등	<p>1) 합자법인 설립 계약서 : <u>현지 합자법인의</u> 신청일 이전 설립계약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명, 현지 법인명, 투자금액, 기간 등이 확인 가능해야함 - 합자법인 주주명부에 신청기업의 등재여부 확인 가능해야함 <p>2) 합자법인의 주주명부(자사양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 및 창업자 국적 표기 	2가지 중 해당하는 1가지 제출
2 해외 파트너사 투자계약서 등	<p>1) 투자계약서 : <u>해외 파트너사로 부터의 신청 기준일 이전의 투자계약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명, 현지 법인명, 투자금액, 기간 등이 확인 가능해야함 - 파트너사/투자자명(주주명부 등재) <p>2) 주주명부(자사양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본사), 해당 시(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 및 창업자 국적 표기 - 해외 법인전환(주식교환 Flip 등)기업은 이전 당시 주주명부 추가 제출 - 본사가 지분을 50%를 초과보유한 자회사를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 자회사 주주명부 추가 제출 	

③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업의 우수 성과를 인정한 과기부 장관상 표창 기업(기업수상에 한함, 개인수상 제외)**

제출서류	내용	비고
1 상장 사본	○ 최근 3년 이내 수여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기업수상